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8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8. 27. 장덕준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. 8. 31.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1. 9. 8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진천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『청소년기본법』 제47조 및 『청소년활동 진흥법』 제5조에 따라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3) 지원대상,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4)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- 5)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6)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### 3. 검토보고 (박춘주 전문위원)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『청소년기본법』 제47조 및 『청소년활동 진흥법』 제5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을 돕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.
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
  -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마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하였으며
  - 안 제5조에서는 탐방활동에 많은 참여를 위해 운영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내 학교, 대안교육기관, 구립청소년시설,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6조와 제7조는 탐방활동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을 규정하고

- 안 제8조는 탐방활동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,
  -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등 총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현재 마포구에서는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인 『청소년기본법』 제47조 및 『청소년활동진흥법』 제5조를 근거로 2015년부터 청소년 역사 유적 탐방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한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나,
- 마포구 청소년들의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 추진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근거 법규가 미흡하여 탐방활동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근거 법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**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사업 추진현황**

연번	연도	탐방장소	참가 청소년	소요예산 (천원)	사업주관
1	2015	충청도백제문화권 현충사, 독립기념관	71	4,000	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
2	2016	강화도일대 광성보, 강화역사박물관 등	67	4,000	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
3	2017	충북제천 박달재공원, 의림지 등	58	4,000	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
4	2018	경기도여주 세종대왕릉, 도자기체험 등	60	4,000	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
5	2019	충남부여 백제역사 유적지구	52	4,000	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
6	2020	강화도일대 광성보, 강화역사박물관 등	19	4,000	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

## ○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라 마포구 거주 청소년들의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
- “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사업”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 법규가 마련됨으로써 “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사업”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.

※ 참고자료 : 관련법규

## [관련법규]

### 청소년 기본법

[시행 2020. 11. 20] [법률 제17285호, 2020. 5. 19, 일부개정]

**제47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  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### 청소년활동 진흥법 ( 약칭: 청소년활동법 )

[시행 2020. 11. 20] [법률 제17286호, 2020. 5. 19, 일부개정]

**제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**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.  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활동 프로그램,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 
[전문개정 2014. 1. 21.]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